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97
----------	-----

2019년 9월 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7일, 김혜련 의원 외 25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혜련 의원)

- 가. 제안이유
 -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안 제31조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하수도사용량 10^{m³} 이내의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 참고로,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6호, 김혜련 의원 외 30명 공동발의)이 발의(2019.08.07.)되어 있어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천재지변인 경우 : 면제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 면제 3.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수 되어 수도요금이 감면된 지역인 경우 : 면제 4. 제빙업·빙과류제조업·청량음료제조업·주류제조업·시멘트·가공업 또는 철도역 등에 사용한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어 신고한 경우 : 그 차이량에 대하여 면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10세 제공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6.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내 공장인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 :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제34조(감면) ① 1. ~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 : 면제</p> <p>9.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면</p> <p><신 설></p> <p>10.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p>	<p>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p> <p>11. 그 밖에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p>

■ 감면대상 적정성 측면

-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¹⁾과 애국지사²⁾를 말하며,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법 제5조³⁾에 따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순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실태⁴⁾를 살펴보면 전체 독립유공자

1)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3)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및 그 유족의 74.2%가 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70.3%가 재산 2억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평균(2015년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222만원, 2015년 기준 가구당 총자산 2억 52백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서울시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수도사용료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료됨.
- 다만,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등의 현황 파악이 반드시 선결되어야하는 바 매년 감면대상의 주소 이전, 사망, 해외이주 등의 각종 변동사항을 명확히 조사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징수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형평성 측면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하수도 사용량 $10m^3$ 이내의 하수도사용료를 면제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5)에 따른 국가

4)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7, 3·1운동과 건국 100주년 기념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5)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

유공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 ⑥ 생략

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훈대상은 총 114,563명이고, 이 중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은 총 보훈대상의 1.6%에 해당하는 1,990명임.

[표 2] 서울시 보훈대상자 현황

(2019. 7. 31. 기준 / 단위 : 명)

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전상/공상)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공· 보국수훈자	4.19 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특수임무유 공자	참전 유공자	기타국가 유공자
114,563	1,990	17,946	8,935	22,917	324	589	7,482	601	53,625	154

※ 보훈대상자 현황은 본인 및 유족까지 포함

■ 재정적 측면

-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조6)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가목7)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과 같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해 하수도 10^m³ 이내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면제하려는 경우 면제에 따른 하수도사

6)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7)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 다. 생략

2. 생략

용료수익 감소액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6호, 2019.7.19.)’을 수립하여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수익 감소액에 대해 2020년부터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 간 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감면액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서울시민 1인당 월평균 하수배출량은 약 $5.83m^3$ 로 본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 $10m^3$ 이내 사용량에 대한 면제’는 약 1.7명의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되며, 월 $10m^3$ 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2019년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1인당 감면액은 월 4,000원, 연 48,000원에 해당함.
- 따라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전원이 감면을 받을 경우(1,990명, 2019년 7월 기준, 국가보훈처) 연간 총 하수도사용료 감면액은 약 9천 6백만원 수준으로 추계됨.
- 참고로, 서울시는 본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부과·징수 전산망의 수정과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사전홍보 등에 최소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본 개정안은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금년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차원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용한 하수도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함.
- 다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감면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회계 간 재정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감면혜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97

발의년월일 : 2019년 08월 07일

발 의 자 : 김혜련, 고병국, 오한아, 여 명,
최 선, 이동현, 김정태, 이광호,
김화숙, 강동길, 우형찬, 홍성룡,
김제리, 장인홍, 봉양순, 김소양,
오현정, 김상진, 이경선, 이영실,
김기덕, 김춘례, 서윤기, 전석기,
장상기, 임종국 의원 (26명)

1. 제안이유

- 금년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음
-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해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함 (안 제31조10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감면)제10호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재정수입의 순감소액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총비용 = 466,320천원(연간 93,264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순위자1명 하수도요금 감면액)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4년)

- (10㎡당 이용액 X단가400원) X 12개월 1,943명 = 93,26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입	하수도 요금 감면액 (조례안 제2조)		△93,264	△93,264	△93,264	△93,264	△93,264	△466,320
	소계(a)		△93,264	△93,264	△93,264	△93,264	△93,264	△466,320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93,264	93,264	93,264	93,264	93,264	466,320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산출예산 반영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이수연

☎ 02-2180-7945

e-mail : sooyeon7@seoul.go.kr